

제303회 임시회  
2011. 9. 30.(금)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 
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

충 청 북 도 의 회  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「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 
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2011. 9. 30.(금)  
행정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유완백 의원 외 6인
- 나. 발의일자 : 2011년 9월 9일
- 다. 회부일자 : 2011년 9월 15일
- 라. 상정일자 : 2011년 9월 26일

(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)

### 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생략)

### 가. 제안이유

-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 개정(제10559호, 2011.4.5) 및 동법 시행령 개정(제22780호, 2011. 3. 30)에 따라 과거 조례에 위임하여 정했던 과태료 경감사항을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조례위임의 근거를 상실한 조례를 폐지코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손자용)

금번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

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 개정(2011.4.5) 및 동법 시행령 개정(2011. 3. 30)으로 과거 조례에 위임하여 정했던 과태료 경감사항을 법 시행령에 신설함에 따라 조례의 존속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###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

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

제40조(과태료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1.4.5>

1.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
2. 삭제 <2011. 4. 5>
3.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
4.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
5.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
6.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

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- ③ 삭제 <2009. 3. 18>
- ④ 삭제 <2009. 3. 18>
- ⑤ 삭제 <2009. 3. 18>

### □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

제2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. [전문개정 2011. 3. 30]

[별표 4] <개정 2011. 3. 30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1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	법 제40조 제1항제1호	25만원	50만원	100만원
2. 법 제20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	법 제40조 제1항제2호	25만원	50만원	100만원
3.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경우	법 제40조 제1항제3호	25만원	50만원	100만원
4.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	법 제40조 제1항제4호	25만원	50만원	100만원
5.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법 제38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경우	법 제40조 제1항제5호	13만원	25만원	50만원
6.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경우	법 제40조 제1항제6호	25만원	50만원	100만원